

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12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12월 3일

3. 제안이유

「기부금품모집금지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조성 관련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에 관한 일부 조문정비(안 제2조 2호)
 - “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” 조항 삭제
- 현 운용실태와 부합되지 않는 기금관리 조문정리(안 제4조 1항)
 - “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되” 조항 삭제

· 기금 예탁기관 관련 조문정비(안 제4조 2항)

- "은행법, 농업협동조합법,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
체신관서 등" 을 "도금고" 로 개정함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상위 법령에 맞게 기금조성의 재원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용상의
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기금 조성 재원중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과 기금관리의
세입세출의 현금구좌 관리 조문은 삭제하였고 기금예탁 관리에 있어서도
도금고의 고율 금융상품으로 하여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
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○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